

결의안 20-02

아빈스 지역 서비스 구역의 거주지 수도 서비스 중단 정책

1. 목적. 이 정책은 이른바 “수도 서비스 중단 보호법”으로 알려진 상원 법안 998 을 준수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18 년 9 월 28 일 주지사가 승인한 것입니다.
2. 발효 날짜. 이 정책은 2020 년 4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3. 발표되는 언어들. 본 정책 및 정책에 필요한 서면 통지는 영어, 스페인 어, 그리고 수도 서비스 지역 내 거주민들의 10 퍼센트 이상이 사용하는 기타 언어들로 제공되고 발표될 것입니다.
4. 수도 서비스 중단에 선행되어야 할 요건.
 - A. 수도국은 고객이 육십(60) 일 이상 연체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납을 이유로 거주지 서비스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칠(7) 일 전에 수도국에서는 계좌에 명기된 고객에게 전화나 서면 통지를 통해 연락할 것입니다. 고객은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661) 854-2127 로 수도국에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 B. 수도국에서 세부 항목 (A)에 따라 계좌에 명시된 고객에게 전화로 연락했을 때, 직원은 이 정책을 서면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수도국 직원은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의논해보자고 제안하고, 고객에게 다음 중 적어도 한 가지를 제공합니다. 즉 대안 납부 일정, 지연 납부, 최저 납부, 미납 금액 분할 상환 요청을 위한 절차 등입니다.
 - C. 수도국에서 세부 항목 (A)에 따라 계좌에 명시된 고객에게 서면 통지로 연락할 때, 요금 미납과 임박한 서비스 중단에 관한 서면 통지가 거주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주지의 고객에게 우편 배송되어야 하며, 통지는 또한 거주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집의 주소로 “입주자”에게 우편 배송되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가 명확하고 또렷하게 적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i) 고객의 이름과 주소.
 - (ii) 미납 금액.

(iii) 거주지 수도 서비스 중단을 방지하기 위한 납부 기한 또는 납부 방식 협의 날짜. 그 날짜는 책임 관리자의 재량에 의해 연장되지 않는 한 연체된 날로부터 육십(60) 일 이내여야 합니다.

(iv) 미납 요금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절차 설명

(v) 고지서 재검토와 항소를 위한 청원 절차 설명

(vi) 미납 서비스 요금 분할 상환을 포함한 지연 납부, 할인 납부 또는 대안 납부 계획을 요청하는 절차 설명.

5. 성실 통지 요구 사항

A. 고객이나 거주지에 체류하고 있는 성인에게 전화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우편으로 보낸 서면 통지가 배송 불가로 반송될 경우, 수도국은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서비스의 즉각적 중단 통지와 미납시 거주지 서비스 중단에 대한 수도국의 정책에 대한 통보를 해당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서 전달하거나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둘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하는 성실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B. 만일 거주지의 성인이 수도세 고지서에 대해 수도국 또는 합법적으로 항소 할 수 있는 다른 행정 또는 법률 기관에 항소할 경우, 수도국은 항소가 계류중인 동안에는 거주지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6. 수도세 고지서 재검토 청원과 항소 절차

A. 고객이 서비스, 고지서나 다른 요금의 정확성에 대해 불평이나 이의가 있다면, 책임 관리자 혹은 담당자와 만나서 이의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고객이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고객은 불만 사항을 제출하고, 면담을 요구하거나 논란이 되는 고지서를 받은지 열흘 (10 일) 내에 조사 개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B. 책임 관리자 또는 담당자와 면담시에, 고객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증거를 제시해야하며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습니다. 책임 관리자는 고객과 만난지 오(5)일 내에 고객의 이의 사항에 대한 서면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C. 만약 고객이 책임 관리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고객은 그 결정을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책임 관리자의 결정이 내려진 후 십사(14) 일 이내에 충분하고 자세한 설명을 곁들여 이사회에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책임 관리자는 다음 정기 이사회 모임에 논쟁점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공청회에 대한 공고가 고객에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D. 책임 관리자는 사실, 이제까지의 조치, 사건의 성격에 관해 자신이 알아낸 구체적 결론을 요약한 논쟁 관련보고서를 이사회를 위해 준비합니다. 공청회에서 고객은 자신의 입장을 옹호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 이사회는 논쟁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신속히 행동해야 하지만, 논쟁 사항을 조사하거나 논쟁에 관련된 특별 보고서를 받기 위해 해결을 다음 정기 회의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연기하는 것은 고객이 자유롭게 기꺼이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F. 이사회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이사회가 항소를 받은지 육십(60) 일 내에 결정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수도권에서 고객에게 해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의도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동 불이행은 요청된 행동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7. 거주지 수도 서비스 중단 금지

A. 수도권은 다음의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는 미납으로 인한 거주지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i) 고객, 또는 고객의 세입자가 복지와 보호 시설 법규의 14088 절의 (b)관의 (1)항의 (A) 호에 규정된 의미의 주요 치료 의료인이 가정용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가정용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 거주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피력한 증명서를 수도권에 제출합니다.

(ii) 고객이 수도국의 정상적 고지서 주기에 맞춰 가정용 서비스에 대한 납부를 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고객이 가구 구성원이 칼워크스(CalWORKs), 칼프레시(CalFresh), 전반적 지원, 메디-칼(Medi-Cal), 보충적 소득 보장/주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영아, 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고객이 가정 연간 수입이 연방 빈곤 수준의 200 퍼센트 이하라고 주장할 경우, 수도국의

정상적 고지서 주기에 맞춰 가정용 서비스에 대한 납부를 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간주됩니다.

(iii) 고객이 미납 금액 분할 상환 합의, 대안 납부 일정, 또는 모든 미납 요금에 대해 수도국이 제시한 유예 납부 혹은 할인 납부를 기꺼이 시작하고자 한다.

B. 만일 상기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도국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제시할 것입니다.

(i) 미납 금액의 할인 상납.

(ii) 대안 납입 일정 참여.

(iii) 수도국이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자금이 제공되었을 경우, 다른 지방세 납세자들에게 부가적 부담을 지우지 않고 자금을 조달해서 미납 금액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할인.

(vi) 일시적 납부 연기

C. 책임 관리자는 (B) 항에서 묘사된 납부 방법 중 어떤 것이 고객에게 제공될 것인지 결정하고 그 납부 방법의 범위를 규정할 권리를 갖습니다. 단 잔여 미불 금액 상황이 12 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나아가 책임 관리자는 할인 금액이 그 목적을 위해 이사회가 수령하고 수도 기금 예산에 전달한 수입으로 자금을 댈 수 있어야 미납 금액의 부분적 또는 전면적 할인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D. 수도국에서 서비스 중단을 알리는 최종적 안내문을 거주지의 눈에 띄고 현저한 곳에 게시한지 오(5) 일이 지난 후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거주지 서비스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i) 고객이 미납 금액에 대한 분할 상환, 대안적 납부 일정, 또는 미납 금액에 대한 유예 또는 할인 상환 계획을 육십(60) 일 이상 준수하지 못할 경우.

(ii) 미납 금액에 대한 분할 상환, 대안적 납부 일정, 또는 유예 혹은 할인 상환 계획을 실행하는 동안, 고객이 현재의 거주지 서비스 금액을 육십(60) 일 이상 내지 않을 경우.

8. 수도 서비스 복원.

A. 수도국은 가정 서비스를 복원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가구의 수입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이하라는 것을 수도국에 입증한 거주지 고객에게 수도국은 다음의 두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i) 재연결 비용을 정상 업무 시간에는 오십(50) 달러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재연결 실제 비용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실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업무 시간 외에는 백오십 (150) 달러를 상회하지 않도록 한정하고, 재연결 비용이 그 금액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실제 금액을 적용합니다.

(ii) 업무 시간에는 50 달러 이하, 업무 시간 이외에는 150 달러 이하라는 상한선은 2021 년 1 월 1 일부터 소비자 물가 지수의 변화에 따라 매년 조정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을 결정할 때 수도국은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 지역의 평균을 사용할 것입니다

(iii) 12 개월마다 한 번씩 연체된 고지서에 대한 이자를 면제합니다.

B. 거주지 고객의 가족 구성원이 칼워크스 (CalWORKs), 칼프레시(CalFresh), 전반적 지원, 메디-칼(Medi-Cal), 보충적 소득 보장/주 보조금 프로그램, 또는 여성, 영아, 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별 보조 영양 프로그램을 현재 받고 있거나, 고객이 가정의 연간 수입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이하라고 주장할 경우, 수도국은 거주지 서비스 고객이 연방 빈곤 기준의 200 퍼센트 이하라고 간주할 것입니다.

9. 임대주-세입자 관계 관련 서비스

A. 단일 가족 단독 주택, 다세대 거주 건물, 이동 주택 공원, 또는 17008 절에 규정된 바와 같이 노동 수용소의 영구 거주 건물의 거주자, 그리고 책임 고객으로 기록된 거주지, 건물, 공원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운영자에게 개별 계량 수도 서비스를 수도국이 제공하는 경우, 계정에 연체금이 있을시 서비스가 종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종료 십(10) 일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입니다. 서면 통보는 거주자에게 미납 계정에 남아 있는 금액을 지불하지 않고도 고객이 될 수 있으며 그런 후에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추가로 알려야 합니다.

B. 수도국은 각 거주자가 서비스 약관과 조건에 동의하지 않고 법의 요건과 수도국의 조례, 결의, 규칙 및 규정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주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주자 한 명 이상이 수도국을 만족시킬 만한 다음과 같은 차후 요금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고 그럴 능력이 있다면, 즉 120 달러 보증금을 지불하고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거주지 지원자가 서비스의 약관과 조건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수도국이 납득한다는 것을 책임 관리자나 담당자가 거주지 지원자가 평가할 수 있거나 수도국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중단할 물리적 수단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하다면, 수도국은 서비스의 약관과 조건을 준수할 거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0. 보고 요구 사항. 수도국은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와 주 수자원 관리국에 수도세를 낼 수 없어 서비스가 중단된 빈도를 보고해야 합니다.

11. 본 정책의 한계. 본 정책에 명시된 이유 외에 고객의 불법적 행동 및 기타 근거로 수도국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본 정책으로 인해 구속, 제한, 손상되지 않습니다.

12. 체납 요금 수금을 위한 기타 조치

A. 정부법 61115 (a) (3) (C) 절에 따라, 수도국은 미납 요금에 대해 고객에게 십(10) 퍼센트 비율로 벌금을 부과하고, 추가로 미납 요금에 대해 매달 일(1) 퍼센트의 벌금을 부가합니다.

B. 정부법 61115(b) 절에 따라, 수도국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체납 요금과 벌금을 과세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C. 정부법 61115(c) 절에 따라, 이사회는 수도국의 법률 고문이 승인한 양식에 연체된 금액과 벌금 그리고 그것을 내야하는 사람의 이름과 최종 주소지를 발표하는 증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과, 책임 관리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기 증서를 컨 카운티 기록 사무소에 기록해야 할 권한을 책임 관리자 또는 담당자에게 부여합니다. 상기 절차에는 다음과 같은 총칙이 포함될 것입니다. 즉 고객에게 증서를 기록하겠다는 의도를 통지한 후에만 기록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고객은 십(10) 일 이내에 증서 기록을 이사회에 항소할 의도가 있음을 수도국에 알려야 한다는 것, 그리고 고객이 항소를 할 경우 이사회가 항소를 고려한 이후에 그리고 이사회가 증서를 기록하라고 지시한 경우에만 증서를 기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